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건강보장 리더

양압기치료 서비스 관련 질의·응답

고시개정(시행일: 2024.1.1.) 반영

- 전체용 -

h·well
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실

목 차

1.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진단기준	1
2. 양압기 처방전 작성 및 발급	10
3. 양압기 요양비 청구 및 지급	17
4. 양압기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등록 등	22
5. 기타사항	25

◆ 용 어 정 의 ◆

- 1) **진단확인일** : 최종 진단방법에 의하여 전문의가 해당질환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날
- 2) **담당의사** : 해당과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 의사
- 3) **신청일자** :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 찍힌 날, 팩스 수신된 날)
- 4) **접수일자** : 양압기 대상자 등록 전산처리일, 의료급여 연계 전산처리일
- 5) **처방전발행일** : 등록환자의 압력 처방, 양압기 종류,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 기재), 등을 처방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날
- 6) **무호흡·저호흡지수(AHI)** : 시간당 무호흡 및 저호흡의 발생빈도
- 7) **순응도 평가** : 급여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중 양압기 사용에 성공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
- 8) **하루 평균 사용시간** :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시간
- 9) **순응기간 중 처방** :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이내 처방한 경우
- 10) **순응기간 후 처방** :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처방하는 경우로 기간은 12개월 이내 처방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1) **요양비 적용시작일** : 양압기 급여대상자로 등록 후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한 날(요양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 의료급여→건강보험 :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이 적용시작일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처방전 사본, 표준계약서 등)
- 12) **요양비 적용종료일** : 요양비 혜택 종료일
- 13) **시작(유효)일** : 적용시작일과 동일하나, 의료급여 연계건은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 14) **상실(유효)일** : 양압기 요양비 종료일
 - ① 자격상실자 : 건강보험 상실일
 - ② 판정오류 : 최종 판정일
 - ③ 수진자나 개인 사유 : 요청(신청 접수)한 날
 - ④ 사망일 및 의료급여 전환 등으로 인한 건보 자격상실일
- 15) **양압기치료 서비스** : 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양압기 대여, 소모품 지급, 소모품 교체, 방문서비스 제공 등
- 16)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 검사자가 동반되어 독립된 수면검사실에서 모든 항목(9개)을 검사하는 표준형 수면무호흡 진단 검사

1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진단기준

Q1-1

양압기란?

○ 기도를 통해 공기를 지속적인 압력으로 불어 넣어주어 수면 시 좁아진 기도를 효과적으로 넓혀 줌으로써 수면무호흡*을 치료하는 기기입니다.

* (수면무호흡)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호흡이 정지하거나 감소되는 증상으로 인해 수면 중 자주 호흡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Q1-2

양압기 급여대상자 및 진단기준은?

○ (급여대상자)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아래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아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가 해당 됩니다.

○ (진단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일반)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 또는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고혈압, 2) 빈혈성 심장질환, 3) 뇌졸중 기왕력, 4)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 (12세 이하 소아)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부주의·과행동증, 4) 아침두통, 5) 행동장애, 6) 학습장애,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Q1-3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유형과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환자유형) 2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협조가 불가능한 질환자(선천이상 기형, 신경발달지연)로서 아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진단기준)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₂ 또는 TcCO₂)이 수면 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
 -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₂ 또는 TcCO₂)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

※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Q1-4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PSG)란?

-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근긴장도, 심전도, 호흡, 혈중 산소포화도, 코골이, 다리 움직임, 체위 등의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 기록, 수면단계와 각성빈도를 확인하여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수면 중 신체 전반의 문제 및 수면무호흡을 진단하는 대표적 검사입니다.
- 수면다원검사는 타입별로 I, II, III, IV형 4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제 I 형 검사는 독립된 수면검사실에서 검사자를 동반하여 시행하는 표준형검사에 해당합니다.

- 제 I 형(Level I) - 다채널(9개 항목) 수면평가장치로 수면기사가 상주하며 전용 검사실에서 검사
- 제 II 형(Level II) - 이동형 수면평가장치로 수면기사 비상주
- 제 III 형(Level III) - 간이검사 기기 또는 Screening device로 불리며, 적어도 4개의 채널((Air flow (호흡), Chest or abdomen movement (흉곽이나 복부 움직임), HR or ECG (심박동 또는 심전도), SpO₂ (산소포화도)) 기능 포함
- 제 IV형(Level IV) - 무호흡측정기, 1개 이상의 채널로 Flow 나 SpO₂ 를 확인 가능

Q1-5

진단기준에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만 인정하는 이유는?

- 제 I 형 수면다원검사는 검사자가 동반되어 독립된 수면검사실에서 모든 검사항목(9개)을 시행하는 표준형 검사로서 양압기 급여대상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 I 형 수면다원검사만을 인정합니다.
- 양압기와 같이 급여적용 되는 수면다원검사도 제 I 형 수면다원검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Q1-6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결과지의 유효기간은?

- 검사결과지는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하고, 기존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를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다른 검사(Level II, III, IV)를 받은 경우는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1-7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결과지와 다른 검사(Level II, III, IV)와의 구별 방법은?

-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결과지에만 표기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 I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I) 결과지의 경우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와 차이점은 검사자의 비상주임
 - ① 총 수면시간(TST, total sleep time)
 - ② 비렘수면(NRAM, Non Rapid eye movement)의 Stage N1(1단계), Stage N2(2단계), Stage N3(3단계)
 - ③ 사용된 센서 내역(뇌파, 근전도 등), 다리 움직임(Leg Movement)
 - ④ 검사자(임상병리사, 수면기사 등) 동반 여부로 검사자 성명

Q1-8

급여대상자 등록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기준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

(방법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 공지사항 → 양압기 요양비 적용안내, 요양비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사항 안내 참고

(방법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급여대상자 및 등록절차

Q1-9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전문의로부터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출장소)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②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결과지 (일반 및 소아의 진단기준 해당자에 한함), ③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등록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요양비 → 8.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등록 절차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FAX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

※ 다만,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수진자가 미성년자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Q1-10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발급 가능하며,
 - 등록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과의 전문의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직인이 필요합니다.

Q1-11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의 진단확인일은 언제인가요?

- 진단확인일은 양압기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등록신청서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로 확진한 날’을 말합니다.
 - ※ 해당상병 최초 진단일과 해당상병으로 인해 양압기 급여가 필요하다고 확진한 진단확인일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Q1-12

급여대상자 등록 적용일은 언제 인가요?

- 등록 적용일은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발급일로 소급 적용하고, 90일 경과 후 접수 시 방문 신청한 날 또는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 수신된 날이 등록일이 됩니다.

Q1-13

등록 신청서의 신청인은 반드시 환자 본인만 해당 되나요?

- 신청인은 환자 본인이지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1-14

환자 등록 후 양압기를 사용하던 중 타 상병(양압기급여대상 상병)으로 판명 되었을 경우 또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등록된 상병 외에 타 상병이 중복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등록은 하지 않으며 다만, 기존상병이 판정오류 등으로 변경 된 경우에는 기존 상병은 해지하고 정확한 상병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Q1-15

환자는 등록신청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공단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등록결과통보(SMS) 란에 예’ 로 체크된 경우 수진자가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발송 해드립니다.

Q1-16

요양기관은 환자 등록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요양기관에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대상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 회원서비스 → 양압기 급여대상자 조회(맨 하단)
 -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처방전 서식, 등록대상 상병, 진단기준 등 조회가능

Q1-17

등록 신청 후 변경 및 해지 신고 시 신청절차는?

-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에 수진자 정보 변경 및 해지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 지사(출장소포함)에 방문, 우편 또는 FAX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급여대상자 변경 및 (직권)해지

Q1-18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 등록 신청서 발급비용을 없습니다. 다만, 등록신청 시 진단을 위해 실시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양압기 처방전 작성 및 발급

Q2-1

처방전은 누가 발급 하나요?

- 양압기 처방전은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발급 가능하며, 등록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과의 전문의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직인이 필요합니다.

Q2-2

처방전의 처방기간은?

- (순응기간 중)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이내
- (순응기간 후) 처방전발행일 기준 '23.12.31. 이전 처방전은 3개월 이내, '24.1.1. 이후 처방전은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문의가 판단하여 처방 가능합니다.

Q2-3

순응기간 중 처방과 순응기간 후 처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순응기간 중 처방은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로 등록 후 순응기간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이내) 동안에 발급한 처방전을 말하며,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발급하는 처방전을 말합니다.

Q2-4**순응기간과 순응도 평가란 무엇인가요?**

- 순응기간은 양압기 처방을 받고 사용에 적응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가 해당됩니다. 순응도 평가란 이 순응기간 중에 양압기 사용에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응도 평가 기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 이상인 경우 양압기 사용에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지속적 급여 대상자로 인정되며 다만, 순응기간 중 사용한 기간은 순응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를 적용합니다.

예시) 최초 처방기간 7.2~9.29(9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 사례1: 총 25일 [7.2~8(7), 7.25~31(7), 8.10~16(7), 9.1~4(4)] → 순응실패
- 사례2: 총 21일 [7.16~22(7), 7.27~8.2(7), 8.5~11(7)] → 순응성공

Q2-5**순응도 평가 결과 성공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환자는 양압기에 내장된 메모리 카드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후에 순응에 성공한 경우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 전문의가 환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을 확인 후 처방전을 발급 하면 됩니다.

Q2-6**타 요양비와 다르게 순응도 평가는 왜 하는 것인가요?**

- 양압기는 타 요양비와 달리 적용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효과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통과한 자에 한해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순응도 평가 기준은 관련 논문 및 문헌 등 참조기준이 있는 임상적으로 치료효과성이 입증된 조건으로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률이 낮은 양압기의 특성상 순응에 성공한 자에 한해 지속적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협급여 원리에 부합하도록 한 것입니다.

Q2-7**순응에 실패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후 순응에 실패한 경우로 확인된 경우 '순응기간 후 처방전' 발급은 불가하며 급여대상자 등록이 해지되고 이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순응에 실패한 경우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경과 후 급여대상자 등록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전 발행, 순응도 평가 등 절차가 최초 양압기 처방시와 동일하게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Q2-8**순응도 평가는 최초에 한번만 하나요?**

-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후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해당될 경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계속 급여 적용이 되며 이 경우 순응기간 후에는 순응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응에 실패한 경우에는 180일 이후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순응도 평가를 다시 해서 지속적 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는 이후 순응도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 적용 되나, 처방전에 하루 평균 사용시간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계속 급여인정 한다. 단,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기재하고 사용내역을 첨부하도록 하여 꾸준한 사용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Q2-9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야(같은 날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급도 가능) 하며,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안내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확인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 회원서비스(하단) → 양압기 요양비 대상자 조회

※ 조회 시 등록여부, 등록일 및 순응여부 미확인(순응기간 종료일 포함)이 표시됩니다.

(예시) 등록된 경우: 등록일 YYYY-MM-DD. 다만, 미등록자는 양압기 대상 자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순응여부 미확인자의 경우에는 순응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결과 순응한 자에 한해 순응기간 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순응하지 못한 자는 처방전 발급이 제한되며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경과 후 등록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Q2-10**처방전 발급 기준과 처방항목은?**

- 공단에 급여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순응기간 중 처방은 양압기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이내 처방할 수 있으며,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에 성공한 여부를 확인하여 순응한 자에 한해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순응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순응기간 말일에 직권으로 등록 해지되며, 재등록을 원할 경우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경과 후 등록 신청서 및 처방전을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처방전에는 상병코드, 상병명, 압력처방,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 해당), 처방 구분, 처방기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기재하고, 양압기 종류도 함께 처방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 사용내역* 반드시 첨부. 다만, 순응기간에는 연이은 30일 기기 사용내역 제출

* 사용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모델명, 기기번호, 환자이름, 사용기간, 4시간이상 사용일 수, 하루 평균 사용시간, 장비모드(Device Mode), 압력(Pressure), 누수(Leak), AHI 등

② 이중형(BiPAP) 처방의 경우에는 양압기 압력적정 수면다원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고, 수면과탄산혈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 반드시 추가 첨부

Q2-11**압력적정 수면다원검사(Titration)는 무엇인가요?**

- 양압기 사용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수면다원검사 외에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양압기 치료를 위한 기기의 적정압력을 별도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Q2-12

양압기 처방 시 양압기 압력적정 수면다원검사(Titration) 결과지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 양압기 종류 중 이중형(BiPAP)으로 처방 시 양압기 압력적정 수면다원 검사(Titration) 결과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속형(CPAP)과 자동형(APAP)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 및 순응도에 따라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형(CPAP)과 자동형(APAP) 처방시 환자 상태에 따른 전문의의 판단으로 해당 압력적정 검사를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Q2-13

양압기 종류별 처방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속형(CPAP)과 자동형(APAP)의 경우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며 이중형(BiPAP)의 경우에는 지속형(CPAP)과 자동형(APAP) 사용에 실패했을 때 처방전 기준에 따라 처방 가능합니다.

Q2-14

이중형(BiPAP) 처방기준 및 제출서류는?

-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사용하였을 때 (다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15cmH₂O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였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₂ 또는 TcCO₂ 또는 EtCO₂가 50mmHg 초과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 (12세 이하는 5) 초과일 때

※ 제출서류: BiPAP으로 처방 시 양압기 압력적정 수면다원검사(Titration) 결과지 반드시 첨부하고, 수면 과탄산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분압은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추가로 첨부

Q2-15

양압기를 종류별로 왜 처방하나요?

- 환자의 수용성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의가 환자상태에 따라 적합한 양압기를 처방하기 위함이며 전문의의 지시 없이 환자가 임의로 기기 종류 및 설정 압력 값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 중인 양압기의 종류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Q2-16

계속 양압기 요양비를 지급 받으려면 순용기간 후 처방전을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순용기간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요양비지급 청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 공단에서는 환자가 제때에 처방전을 발급받지 못해 요양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방기간 종료 60일전에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환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SMS 문자 안내

(예시) 000님, 양압기의 처방기간 종료일은 YYYY-MM-DD. -국민건강보험-

Q2-17

처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 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 유효 기간은?

- 처방기간 종료일 전 처방전을 받은 경우, 최근에 발급한 처방전의 처방 기간이 유효합니다. 다만, 처방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한 처방전의 경우 처방 시 처방시작일은 직전 처방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재 하여야 유효합니다.

Q2-18

「양압기 처방전」 이 아닌 일반 처방전도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4]서식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으로 발급 받아야만 요양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Q2-19

대상자 등록 전에 발행한 처방전도 인정하나요?

- 양압기 대상자 등록 전에 발행한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2018.7.2.)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당일 처방전도 인정합니다.

Q2-20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비로 양압기를 사용하던 환자도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도 시행 이전에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환자도 [별지 제2호의4]서식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요양비 청구 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2-21

처방전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 별도의 처방전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처방전 발급 시 진단을 위해 실시한 진찰 및 검사료 등은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3

양압기 요양비 청구 및 지급

Q3-1

양압기 요양비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급여 적용 시기는?

- 양압기 요양비는 등록 또는 처방시점이 아닌 **양압기 기기를 확정**한 후 **대여 계약기간의 시작일**(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부터 **요양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 후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에 대여업소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양압기를 대여하여 사용한 기간을 급여 적용합니다.

-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후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 신청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하며, 90일 경과 후 접수하면 등록 신청서 발급일로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예시) 2018.7.2. 확진, 환자등록 → 2018.7.3. 양압기 처방전 발행 → 2018.7.3. 기기확정 및 사용 개시일(=대여 계약기간 시작일) → 양압기 **요양비는 2018.7.3일부터 적용 됨.**

※ 업소 계약 시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제2조(계약의 내용)에 양압기 대여 계약기간의 시작일에는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여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Q3-2

순응기간 동안 요양비 급여 적용기간은?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동안은 순응여부 관계없이 급여 적용되며 순응기간 중 기기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양비 적용 시작일은 기기 확정 후 사용 개시일(=대여 계약기간 시작일)입니다.

예시) ① 순응기간 중 처방기간(2018.7.2.~9.29.) → 2018.7.2. 기기확정 및 사용 개시일(=대여 계약기간 시작일) → 2018.9.29. 계약 종료일: **요양비 급여 적용기간은 2018.7.2.~9.29.(90일간)**입니다.

② 순응기간 중 처방기간(2018.7.2.~9.29.) → 2018.7.4. 기기확정 및 사용 개시일(=대여 계약기간 시작일) → 2018.9.29. 계약 종료일: **요양비 급여 적용기간은 2018.7.4.~9.29.(88일간)**입니다.

Q3-3

양압기 요양비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공단에 등록된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의 등록된 품목으로서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입니다.
- 양압기 기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에 대한 기준금액은 다음표와 같으며 마스크의 경우 1년에 1개에 한해 건강보험이 지원됩니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양압기 대여료	지속형(CPAP)	76,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1개(연)

Q3-4

양압기 요양비 지급 기준은?

○ 양압기 요양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 받거나 구입한 경우: 해당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 받거나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대여·구입금액의 100% 지원 (다만, 순응기간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대상자도 지원 대상이며 세부사항은 해당 시·군·구(청구, 지급)로 문의

Q3-5

소모품(마스크)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하나요?

○ 마스크는 연간 1개에 한해 지원하며, 1개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Q3-6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 공단에 등록된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에서 기기대여 및 소모품을 구입이 가능하며, 기기대여와 소모품구입은 동일업소에서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제공업소, 등록제품

Q3-7

인터넷으로 소모품을 구입해도 요양비를 지급 하나요?

-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압기 소모품은 반드시 공단에 등록 된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서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 가능합니다.
 - ※ 기기 대여업소와 동일한 업소에서 소모품을 구입해야 함. (기기대여료에는 소모품 교체하는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음)

Q3-8

요양비 지급 청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양압기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양비(기기대여료, 소모품 구입비)는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청구해야 하며, 기기 대여를 월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그 달은 대여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청구 기간은 양압기 기기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Q3-9

양압기 요양비 청구 및 지급 절차는?

- 양압기 요양비는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작성’
 - ②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치료 서비스(양압기 임대 및 소모품 지급) 제공 받기

- ③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청구(방문, 우편)
- ④ 공단은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80%를 요양비로 지급(차상위는 기준금액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다만,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Q3-10 양압기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아래 구비서류는 모두 원본(다만, 표준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②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 순응 중 처방전(90일 이내)
 - 순응 후 처방전(12개월 이내, 양압기 순응에 성공한 자에 한하여 발행)
 - 이중형(BiPAP) 처방 시 양압기 압력 적정 수면다원검사(Titration) 검사 결과지 또는 이산화탄소분압 검사 결과지(or 검사결과 명시한 소견서) 1부 (이중형 양압기 최초 처방 및 기기 변경 시에 한함)
- ③ 당월 양압기 사용기록지 1부
 - 순응기간 후 최초 청구 시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기록 제출
- ④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1부
 - 최초 제출한 계약서에 변동사항 없을 시 재처방기간까지 계약서 내용이 연장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제출 생략가능(표준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참고)
- ⑤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본인부담금) +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 + 거래명세서 각 1부
 - 전산청구 시 제품 등록 하였거나, 서면청구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제출서류를 통하여 구입한 제품을 확인 가능한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가능

Q3-11 공단에 청구하면 며칠 후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6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12 양압기 기기대여와 소모품 구입은 반드시 동일 업소에서 제공 받아야 하나요?

- 양압기 기기 대여료에는 방문서비스(기기 및 환자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 등) 비용을 포함하여 대여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임대하는 업소에서 소모품도 함께 구입하셔야 됩니다.

Q3-13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가 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수진자(또는 그 가족)는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위임받은 준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비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최대 위임 가능기간: 5년)

환자, 그 가족 (위임하는 사람*)	➔	○ 공단에 ‘요양비지급청구 위임장’을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준요양기관	➔	○ 수진자(그 가족) 대신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방문, 우편, 팩스, 전산 (요양기관정보마당) 공단에 제출

* (위임하는 사람) ① 수급자 본인, ② 수급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법정대리인(수급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Q3-14 청구인은 환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청구인은 진료 받은 사람, 진료 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으로 공단에 등록된 기관이 가입자등에게 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를 대여하여 재가치료서비스를 제공

Q3-15

인공호흡기치료와 중복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 중복청구가 불가합니다. 인공호흡기 기능에 양압기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인공호흡기치료 또는 양압기치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4

양압기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등

Q4-1

양압기치료 서비스란?

- 공단에 등록된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 업소'가 전문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사람에게 양압기를 대여하고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소모품을 지급·교체해 주고 기기 및 환자상태를 점검·기록 관리하여 환자가 적정 사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Q4-2

양압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기준은?

- 양압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의3제2항 및 별표4의5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로서 등록 시 양압기 및 소모품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Q4-3**업소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방문, 우편, FAX)하면 됩니다.
- 관련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 반드시 원본을 제출, FAX 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가능
 - ※ 등록신청은 업소 및 제품 조회 와 관련하여 공단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자 본인의 서명(날일)을 필히 해야 합니다.

Q4-4**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 양압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소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업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양압기와 소모품 등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은 의료기기 신고 관련 법령 변경으로 교부되지 않으므로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통해 열람용으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 식약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 → 사업자 아이디 로그인 → 나의 민원 → 품목허가(신고)사항 → 업체 품목 확인 후 열람용 출력

Q4-5**양압기 기기(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나요?**

-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5조의3에 의거 양압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서 양압지속유지기에 한정합니다.
 - ※ 의료기기 수입 신고증의 분류기호(품목코드)란에 양압지속유지기는 A07010.08로 표기됨.
 - ※ 품목 취하 : 향후 제조·수입은 하지 않으나 사용은 가능함. 품목 취소 제품은 등록불가

Q4-6

업소 등록 후 업소의 변경 또는 탈퇴 시 신청 방법은?

- 업소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변경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첨부 후 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Q4-7

업소의 서비스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별표 4의5] ‘양압기 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 제2호 및 공단이 공고로 정한 ‘양압기 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양압기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등록, 양압기 치료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

Q4-8

등록업소 허가증이 별도로 있나요?

- 공단에서 등록대상 업소로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그 업소의 적당한 곳에 게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등록 업소임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4-9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4의5] “양압기치료 서비스기준 등”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로 등록한 자와 양압기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은 표준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Q4-10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 계약기간은 양압기 처방전의 처방기간 범위내에서 해당 업소와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관련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양압기 치료서비스제공업소 및 제품등록, 양압기 치료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계약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Q5-1

등록 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나요?

○ 양압기 급여대상자로 등록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등 일부내용 수정을 위한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 다만, 해지 후 재등록시에는 최초등록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등록 시 필요한 검사등도 다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 I 형 수면다원검사(Level I) 검사 결과지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재등록시 검사 결과지 유효기간 내에 해당될 경우 재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Q5-2

양압기 요양비를 지급받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 중에 양압기를 사용한 경우 요양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양압기 요양비를 지급받던 사람이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에 양압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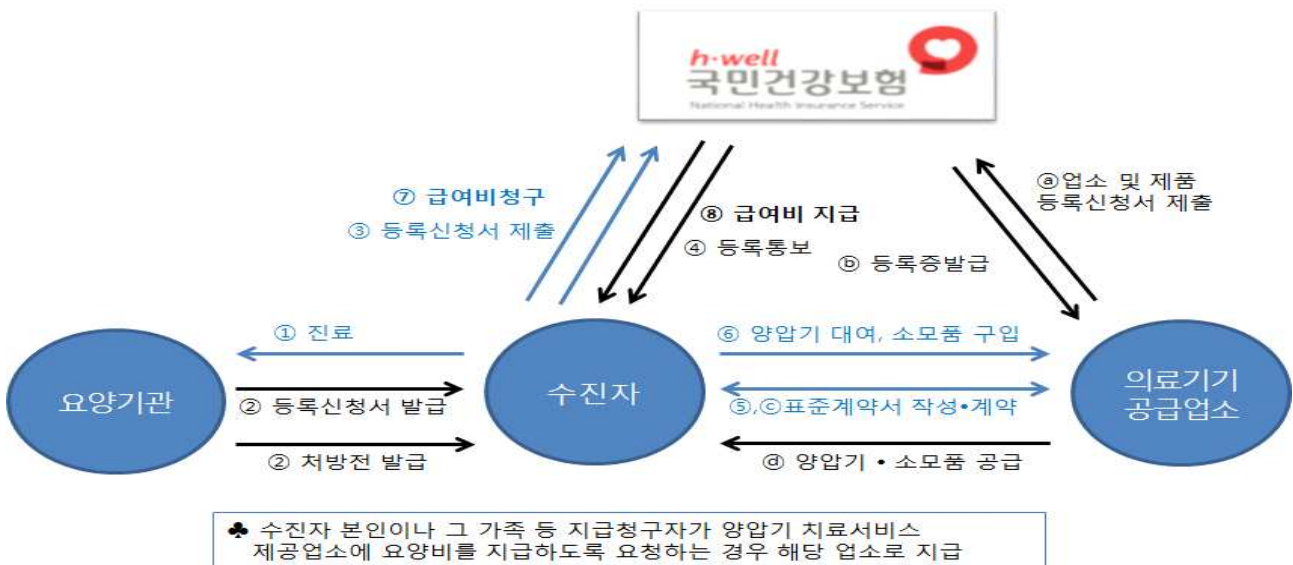
※ 다만, 요양급여비와 요양비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Q5-3

세부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공단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서식자료실 → (검색조건) 보험급여 OR 검색조건 양압기 입력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 관련 서식

[양압기 요양비 환자등록 및 지급처리 절차 등]



* 위 Q&A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급여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